

기안자	기안처 항이철	전화번호	301	공보	요불필요
운영기탁장	기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계2부시장	시장	
심조자명	시정국장	9.8	보존	한	
기년월일	시년월일	9.18	봉제	장	장
분류기호	문서번호				
영수함	유신조		발신		
제목	도시개발도시상설(도시개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동방동 70번지(도림동)도도막 구거				
	는 도시개발 도시개발 부근이 도시개발 구거를 건설하여 구안로지 건설부장				
	군이 승인 하에 건설한 바 도시 개발사업 5-223(9.7.3)일				
	경국사 1-1 (1.1.1)가 기안 승인 하에으므로 도시개발 공모하고				
	라는 식으로 장의 사항으로 기안 하였습니다.				
	<p>영등포구청 9.18</p> <p>도시개발(조영)부 도시개발과장 김성우</p> <p>공공기관 (간접)은 도시개발국 기안로지 건설부장 김성우에 비치하</p> <p>여 건설사업의 공략에 공한다.)</p> <p>9.18</p> <p>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도시개발과장 김성우</p>				

공고

도시개발
의
결정

93

115
7K-1

서울특별시 125
593

구	본	종류	모집명	모집일	기	점	종	점	유요점	총인원	폐지이유	비고
심설	도모				신대광동	532		574	205	도모교향	도모인원	32명
심설	구거				361		586-3	13	구거이원	구거인원	34명	
폐지	도모				570	함	362	135	도모교향	도모인원	550명	
폐지	구거						572-4	207	구거이원	구거인원	203명	

제2안

수신 | 영등초등학교 | 발신 | 시장

제목 | 폐도 지구 및 심설 도모 및 구거 교향

계구 군나 신대광동 37C번지 부근 도모 및 구거를 폐지하고 도모 및 구거를 심설 하엿기 걸침 공고문 사본 및 모형을 송부하니 계구에 비치된 모형을 정려하고 계구계시관 및 구향 동계시관에 제시하여 계구의 총람에 의하고 사무 직급에 자질이 없도록 각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집. 공고문 사본 및 모형 각 1부. 끝.

제3안

수신 | 시내 영등초구 신대광동 37C | 발신 | 시장

제목 | 도모 폐지 농보

귀하가 제출한 도모 및 구거를 폐지하고 도모 및 구거를 심설하여 교향모터 함에 대하여는 별첨 공고문 사본과 같이 폐도 및 폐구 하였으니 도모 및 폐구 함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조속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

유집. 공고문 사본 및 도발 각 1부. 끝.

116

경 신 부

전국 - 33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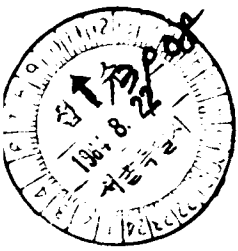
수신

주소

이름
직업
주소
전화번호
비고

계 조사 용

Handwritten signatures and stam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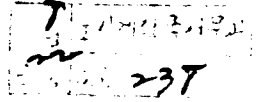


1987. 8. 22

95

1K-K

118



8 22 128 15890

기안자	계획과 황인철	전화번호	361	공보	요불필요
운영담당	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계부시장	시장	
협조자 서명	재정과장	사무	보존 년한		
기년월일	1964. 8. 12	시년월일	64. 8. 13	분류기호	경서기장
문서번호	415	발신	시장		
경수함	유선조	건설부상관	발신	시장	
제목	도로폐지 조건부 승인에 대한 조건해제 요청				
<p>1. 건축시지령 415-2556 (64. 7. 3) 에 대한 가항의 조건해제 요청입니다.</p> <p>2. 동지령 가항에 대하여 선정인으로부터 별첨 재심청구가 있어 현장조사한바 현지 으로 보아 현재로서는 6m 도로 폭으로도 충분하며</p> <p>3. 앞으로 소로망 계획시 참작하겠기 우선 본건 가항에 조건을 해제하시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선. 조건 재심청구서 사본 1부 끝.</p>					

복 명 서

시내 명등골구 신대방동 370 번지 신격호로 부
터 제출된 별첨 도도 계획에 관하여 (64. 7. 3)
조사건내 다음과 같이 복명 하나이다.

1964. 8. 3.

도독기사 유 병



서울특별시장 귀하

1. 기 회 명등골구 신대방동 370 번지
2. 내 용 건국시 지령 415-2556 (64. 7. 3)
로 조건부 승인이 있으나 신청인
으로부터는 8개 확보에 대하여 현재
공강 건물이 귀속되어 6세로 조건
을 변경코리 요청하는 것임
3. 기 건 현 지역으로 보아 6" 도로 준어도
충분할 것이며 공군나관 학교 교차
로 근처 있어 지강 없다고 사
료된 것

[Handwritten signature and official stamp]

공
관

수신 서울특별시청 귀하
건명 도로제지에관하여

1. 귀하 2964. 7. 8 서도제 415-15388호로 용지하여
주신 도로제지에관하여,

2. 건설부장관이 제시한 조건,

가. 신청지에 관한 신설계획도로는 폭원6미터로
계획할것.

나. 도시계획에 필요한 사유지로서 제포부지와
조금가능할 모지는 용도로 포함할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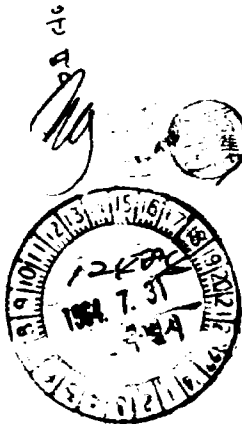
중 (나)에따하여는 이의가없으나,

(가)에따하여는 동근제지우편설계가 공군사관학교에
인접하고있으며, 폭원은 공군사관학교전용도로이고 우측은
일부로서 인근우행이관문하여 폭원6미터의도로는 사실상
불필요하지않을 자사모의오니,

3. 제작성의검토하시와 폭원6미터도로로 제문하여
주심을 간망하나이다.

공

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재방동370
신 리 오



95

9X-3

Handwritten notes and signatures in a rectangular box.

131
12/

P. 1 필요 불필요

자 체 종 제	기 안 처	제 1 회 의 결 의 문 서	전 화 번 호	근 거 서 류 접 수 일 자
우 영 담 임	제 1 회 의 결 의 문 서	도시계획국장	제2부시장	시 장
관 계	시 행 규 칙	시 행 규 칙	보 존 한 정 치 의 장	13/88
관 서 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	발 신	
기 안 년 월 일	1984. 7. 6	시 행 년 월 일	1984. 7. 6	
분 류 기 호	A5제 415	전체동계	총 결	
결 수 참 유 신 조	(내부결재)		발 신	
제 목	도로폐지			

제1회 회의결의문서
도시계획국
제2부시장
시
장

제1안

1. 영등포구 신대방동 370번지 신적호외 도로폐지 결정에 관한 사항
2. A5제 415-900 (64.5.14)로 도로폐지 인가를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한바
3. 별지 (건축가장 45-2556. (64.7.3)와 같이 조건을 부여하여 승인되었기
4. 이를 제2안과 같이 폐지 신청(신적호)에게 통보하여 조건부 승인을 시행되자 시안 결재를 바람과

유청

서울특별시

132

7K-9

122

시도 제 415

1964. 7. 9

시도청
수신
제록

시내 영동포구 신대방동 370

발신 서울특별시

도로 계획

1. 귀하에게 시도 제 415-900 (64. 5. 14)로
증정 통지한 도로 계획에 대하여
2.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국시시지정 45
-2556 (64. 7. 3) 다음 조건을 부여하 승인 되겠)
통지 함다

가. 신청서에 정한 시설 계획 도로는
국회 84로 계획 할 것

나. 도시 계획에 필요한 사후 처리
비용 부담의 교환 가능한 도로는 상호 교환
할 것

3. 도로 및 배수 조사

종별	기	점	구	점	부	면	면	비	고
소도	영동포구 370면리 앞	신대방동	영동포구 372면리 앞	신대방동	약 10.4	약 98.4	약 159.0		
'	'	'	'	'	약 4.3	22.6			
구거	'	'	영동포구 372-4면리 앞	신대방동	약 74.5	52.0	약 28.0		
계							약 87.2		

끝

건 설 부

건국시지행 415-2556
 수신 서울특별시감
 제목 도로 매지

1964. 7. 3

1. 서도제 415-9001 (1964. 6. 23) 로 신청한 서울 특별시영동모구 신대방동 370번지앞 도로 매지에 대하여는 다음 조건을 부하여 승인함.

가. 신청지에 접한 신설계획도로는 폭원 8미터로 계획할것.

나. 도시계획에 필요한 사유지로서 매도 부지와 교환 가능한 토지는 상호 교환 할것.

2. 매도 및 매구 조서

종별	기 점	종 점	폭원	면적	면적	비고
소로	영동모구신대방동 370번지 앞	영동모구신대방동 392번지 앞	약 10미터	약 98㎡	약 590㎡) 64. 7. 3
"	"	"	약 4.3 "	약 226"		
구거	영동모구신대방동 370번지 앞	영동모구신대방동 372-4번지 앞	약 4.5 "	약 207"	약 282㎡	

약 672㎡ .



도시계획국계좌
 No. 1200

101

124

134

자 재 분 계	기 안 처 리 항 목 인 정	전화번호	근거	부 결 수 일 자
운 영 담 임	계 획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i>MM</i>				<i>22</i>
<i>5/5</i>				<i>55</i>
관 재 관 서 명	<i>사무소</i>			
기 안 년 월 일	<i>1964. 5. 5</i>	시 행 년 월 일		보 존 년 월 일
분 류 기 호	<i>411</i>	전 체 부 재	<i>5</i>	정 서 기 장
경 수 활 유 형 조	<i>영등포구 신대방동 370</i>		<i>귀하</i>	<i>시 장</i>
제 목	<i>내방 요청</i>			
<i>귀하가 제출한 영등포구 신대방동 370 앞 테드</i>				
<i>뿔테구 신청에 대하여 사무라함을 하고져 하오</i>				
<i>니 오로 5월 9일 한 계획과로 출두하여 주시기</i>				
<i>바랍니다. 끝</i>				

*nx-11
12*

경 조 권

수 신 계룡구라장 1964. 4. /

제 목 구거양 도로제시

1. 결건 방침라갈이 64. 3. 13
로 가 나 다 아 랑, 라갈은 조건으로 랑의
랑수 없었던 바

2. 귀라트하여금 64 3. 30 자
1. 2. 3. 4. 5 랑이 처리방안을 명시하였으므로
양 5 랑라갈이 차질없이 처리가능조인하여 랑
의 랑내 랑

인원구장 4/11 안리라장 6/12 윤시남인 7/14

75-12
126

서울특별시 136

협 조 권

수 신 관 리 과 장 1964. 3. 30

내 복 - 구-거북 도로 계획

1. 이점리는 - 공군사관학교 기지내에서
연결도로가 될수없는 리다이며

2. 도로-부속은 저점부랑관외 이가름
이후 구-거북 도로에 시행할것이며

3. 기점도로는 같은 부분과 부도로와의
연결되는 도로를 차라리로 되었다

4. 372와 372호 사이에 도리는
공군사관학교 기지일

5. ~~구-거북 도로~~ ~~이후~~ 구-거북 도로에 ~~연결~~
하게 되므로 ~~구-거북 도로~~ ~~연결~~ 되게함

계획과장

~~서명~~ ~~서명~~ ~~서명~~

서

7x-13

서울특별시

수신 계획과장

64. 3. 13

제주 구거 및 도로폐지

1. 귀과에서 함의 의뢰한 물건 배출을
검숙한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함의 할수 없나. 회송
합니다

가. 도로폐지 인점상에 타인의 소유지
가 있어 폐도로 인한 인점지와의 분구 여부의 확인이
없으며.

나 신청인 신적호가 제출한 도로폐
허신에 점한 사유지도로 제공에 대한 토지분할이
신행되어야 하며. 폐도로치한후 제공토지 고한분이
있어 국유화 조치에 따른 점하가 명시되지 않
으므로. 함의 불가 하며.

다. 폐도로 인한 시설도로의 남은부
분에 대한 인점을 여한지

라. 신청인 토지 392번지 및 372-2
사이 비토지 소유자만 (지번 없는부분) 토지대장등본
첨부되지 않나. 함의 할수 없으며.

마. 구거부지의 구적 차이가 있음

관리과장

74-14

128

봉지

서울특별시 138서

P.

필요	불필요
○	○

수신처	기안처	계획과	전화번호	근거서류접수일자
		우병은	381	
영양계측사업	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제2부시장	시장
	2.22			
계명	옹리안임	관리과장	건설국장	이준호
안일	관리안임	하수과장		
일	1964. 2. 22	시행	1964. 5	본문
분류	61	전체동	건설	정서기
유신				10년
조				4001
제				
목	구거 및 도로폐지			

시내 명동로구 신애방동 370번지 신 경 로로우러 시내 명
동로구 신애방동 370번지앞 테드및 폐구 신청을 정하고 비용을 검토한바 신
설도로를 제공하고 도로및 구거의 일부를 폐지하여 상호인한받으려 하는것으
로 현장을 조사하나 별리복 명서와 같이 테드및 폐구하여도 도시계획상 및
구거유지 관리상 별리강 있다고 사료되음이 구거는 별리조서와 같이 폐지하
는 것은 건설부 장관에게 테드 인가신청하려 결재를 바랍니다. 끝.

내거 건설부장관

제1안.
수신 건설부장관 발신시
제목 도로폐지

서울특별시 명동로구 신애방동 370번지앞 도로를 별리 이유로
폐로 도면과 같이 폐지하려 도로법 제77조에 의하여 인가신청하오니 조속

임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집. 폐도 이 유서 / 조서 및 도면 각 1부. 끝.

폐도 이 유서

금반 폐지모저하는 도도는 한꺼번 소유대지배의 도모로서 기이 폐도 확되어 있으며 별지도면과 같이 신설도도를 제공하여 폐도한후 상모고환을 받고 버 함으로 본건 폐도하여 교환함은 당시 도시계획사업에 기여함으로 별지 조서와 같이 소견부로 폐도모저함. 끝.

폐도 조서

종별	기 점	종 요	종 점	독 현	면장	면적	비 고
소도	성등로구신대 방동 370번지 앞	경 국지	성등로구신대 방동 392번지 앞	약 10 약 4.3	약 98 226	약 590평	

끝.

신설 도도 조서

종별	기 점	종 종	종 점	독 현	면장	면적	비 고
소도	성등로구신대 방동 372-4 앞	.	.	6미터	30미터	약 52평	
"	367-1 앞	.	.	35 "	44 "	44 "	
"	369-1 앞	.	.	70 "	80 "	80 "	
"	375-7 앞	.	.	100 "	65 "	65 "	
"	374	368-5	.	25 "	70 "	80 "	
	계					321 "	

7x-16
130

서울특별시 140

폐 구 이 유

본건 폐구모저하는 구거는 사실상 폐구되어 있으며 신설모저 하는 구거(이비
시설되어있음)는 별집 도면과 같이 구거로 되어 있어 폐구하여도 배수에 지장
이 없으므로 폐구부저함.

폐 구 조 서

종별	기 점	종 점	폭원	연장	면적	비고
구거	영등포구신대방동370번지앞	영등포구신대방동372-4번지앞	약 4.5	약 207	약 282평	

참고 : 상기 조서의 폐지된 구거는 폐도우 도로와 같이 폐상인제하여 신설
도로와 곁심정모저함. 공.



신 설 구 거 조 서

종별	기 점	종 점	폭원	연장	면적	비고
구거	영등포구 신대방동 391	386-3앞	4	130	144평	

제 2 안

수신

영등포구 신대방동 370번지

발신시

기록

도록 데지

이하가 신립한 영등포구 신대방동 370번지안 페드빌데구에 대하여는 건설부 장관에게 인가신청 중임으로 중단 됩니다. 끝

11K-18

132

서 문 부 142 시

복 명 서

명이 의하여 시너 영등포구 신어방동 370번지 앞 페도빌 페구현
랑을 조사하고 아래와 같이 복명 하나이다.

1964. 2. 21.

김성평 토출기사 유 병 인

서울특별시 강 카 하

기.

1. 위치 시너 영등포구 신어방동 370번지 앞 페도빌 페구현

1. 소유권관계 별첨 증인서류

1. 도로면적관계 가함

1. 주거면적관계 가함

1. 현 황 금번 페도빌 페구소재하는 지역은 용장너미 위치하고 있음
으로 사실상 페도빌 페구상태로 되어있으며 현저도 도로
말구거가 사용되고 있지 않고 있음.

1. 의 건 본도로말구거는 별리도면과같이 폐지하고 신설도로를 제
증하겠나 함으로 본건 구거는 폐지하고 동태산은 추후 건
설우광관의 도로제기승인후 도로와같이 재산을 인계하
여 신설도로와 상호 교환함은 (국유재산법) 의거) 당시
도시계획 사업에 기여됨으로 페도빌 페구함이 가하라고
사료됨. 끝.

9X-1P

133

서울특별시 143

R 필 요 불필요
0

자 체 종 제	기안처	계 획 과 유 별 은	전 화 번 호 3 6 1	근 거 서 류 접 수 일 자	
영양 계획서	계 획 과 관	국 장	제 부시장	시 장	
2.17.67				2.17	
관 계					
관 시 명					
기 안 년 월 일	1964. 2. 14	시 행 일 의 의	1964. 2. 17	보 존 년 한	3년
분 류 구 조	전체 문제	중 건	정 신 기	25	강
건 수 참 조	영양도주 신에 신	전체 문제 신	중 건 신	정 신 기	강
제 목	내 방 요청				
<p>귀하가 신랄한 페드신링은 정하고 사무타입이 기회를 찾으러 하오니 1964. 2. 24한 도시계획조 계획과에 출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뜰</p> <p>20 레 166 34</p>					

2021년 1월 17일
정신사관

폐도 허가 신청서

- 1. 위치 및 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대방동 370번지 앞
- 1. 폭넓 및 연장 별첨과 같음
- 1. 폐도로제하는 면적 645.7평
- 1. 목적 물치장 으로 사송코저함
- 1. 사유 국도보서 현제 폐도 상례임

위와 같이 폐도 로제 관계서류 (현지실측평면도, 지적도, 안정도 3통, 소유권증명 (등기부등본) 각 1통, 납세권증 2통 첨부 하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64.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대방동 370

윤인 신 각 호



서울특별시장 귀하

1852
830
122 322

115

7x-22

136

146

納稅完納證明書

納稅者住址 蘇州府南門外西門外627番地

姓名 李 振 浩

納稅種類 財產稅 房地稅及各種稅

上述各項地方稅法第... 依... 依... 依...

按... 完納... 證明... 年... 月... 日...

西元一九... 年... 月... 日

住址 蘇州府南門外西門外627番地

姓名 李 東 鍊

南門外長 廣下

外... 實... 證... 明... 書... 日期... 年... 月... 日



26-23

137

147

1964. 5. 9

수신 서울특별시시장 귀하

본인이 1964년 월 일자로 제출한 폐도허가신청서
및 도로제공승인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대방동 370번지앞)
내용에 의거하여 귀시에서허가물류한후라도 도시계획수행상
귀시에서 요청이있을 때에는 하시라도 이어용하겠음을 서약
하나이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대방동 370

성명 신 격 호



115

7X-2X

13P

148

동 이 서

1964. 5. 15

부동산의 표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대방동	395 의5	대지	164평
	동	소	395 의6	대지	108평
	동	소	395 의7	대지	103평
	동	소	395 의44	대지	79평
	동	소	395 의45	대지	62평
	동	소	395 의46	대지	50평
	동	소	395 의48	대지	12평
	동	소	395 의49	대지	96평
	동	소	395 의51	대지	96평

이상대지는 본인소유인바, 금번 신 경호 (李格浩) 씨가 본인소유대지에인접한부분의도로 및 구거를 제거하고자 구부에 신청하였어온바, 본인은 동도로및구거제거에 하등의이의의없아옵기 동이서 제출하나이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함영동 11의1

동 이 자 신 훈 호



表 示 規 定 (不 動 產) 部 門 表 示 規 定

土地、建物登記簿原本記載 (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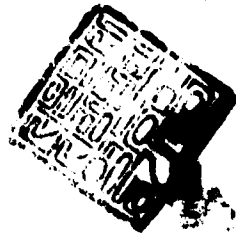
甲	登記事項類別	(不 動 產) 部 門 表 示 規 定	表示規 定 表 示 規 定
<p>〇 所有權 地上權 地役權 抵押權 質權 留置權 先買權 優先承買權 租賃權 借用權 農作權 漁業權 礦業權 其他權利 其他事項 其他類別</p>		<p>〇 所有權 地上權 地役權 抵押權 質權 留置權 先買權 優先承買權 租賃權 借用權 農作權 漁業權 礦業權 其他權利 其他事項 其他類別</p>	
		<p>76-26</p>	

寫字
合號

이 原本은 登記簿에 依하여 이 冊作 成하고
이에 登記簿와 相違 없음을 認 證 함

西 紀 壹 九 六 年 月 日

서울 民 事 地 方 法 院 永 久 保 存 所



151
153

이 謄本은 登記簿에 依하여 이 謄本을 作成하고
이에 登記簿와 相違 없음을 認證함

西紀壹九六 年 月 日

서울 民事

院 大 官 官 署

總 務 課 長 官 官 署



Handwritten signature or name in vertical script, possibly '김영환'.

土地、建物登記簿原本用紙(冊)

表 示 欄 (不 動 產)

表示欄

表示欄
凡在...
...

表示欄

表示欄

表示欄

表示欄

表示欄

表示欄

寫字
合校

甲

表示欄

表示欄

表示欄

表示欄

表示欄

表示欄

表示欄

表示欄

表示欄

表示欄

表示欄

表示欄

表示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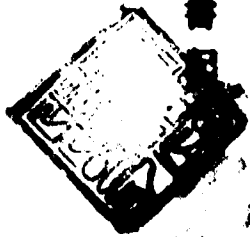
7K-30

이 屬本은 登記簿에 依하여 이 冊 作成하고
이에 登記簿와 相違없음을 認證함

西紀壹九六 年 月 日

서울 民事 地方 法院 印

書 印



이 謄本은 登記簿에 依하여 이 謄作 成하고
이에 登記簿와 相違 없음을 認 證 함

西 曆 一 九 二 六 年 月 日

서울 民事 地 方 法 院



Handwritten signature and official seal of the court official.

132

26-33

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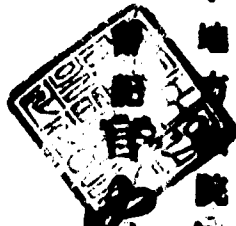
157

이 原本은 登記簿에 依하여 이 冊을 作成하고
이에 登記簿와 相違없음을 認證함

西紀壹九六 年 月 日

서울 民事 地方 官 廳

장영환
장영환
장영환



土地、建物登記簿原本用紙(本用紙)

이 屬本은 登記簿에 依하여 이 冊作威하고
이에 登記簿의 相違없음을 認證함

西紀壹九六 年 月 日

서울民事地方法院

140

7K-37

167
173

51

土地、建物登記簿原本用紙 (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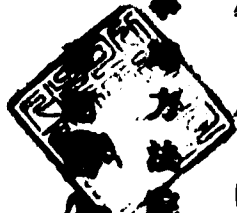
甲	(不表前部不)	部 題 表
<p>番地 事 項 備 註</p> <p>○ 各 項 事 項 備 註</p> <p>○ 各 項 事 項 備 註</p> <p>○ 各 項 事 項 備 註</p> <p>○ 各 項 事 項 備 註</p>	<p>番地 事 項 備 註</p>	<p>番地 事 項 備 註</p> <p>○ 各 項 事 項 備 註</p> <p>○ 各 項 事 項 備 註</p> <p>○ 各 項 事 項 備 註</p> <p>○ 各 項 事 項 備 註</p>
<p>番地 事 項 備 註</p>	<p>番地 事 項 備 註</p>	<p>番地 事 項 備 註</p>
<p>番地 事 項 備 註</p>	<p>番地 事 項 備 註</p>	<p>番地 事 項 備 註</p>

寫字
台校

이 屬本은 登記簿에 依하여 이 冊作 成하고
이에 登記簿와 相違 없음을 認 證함

西曆 一九二六年 月 日

서울 民事 法院 法官 李 奎 所



安 治 權

土地、建物登記簿原本用紙 (本紙)

이 謄 本 은 登 記 簿 에 依 하 여 이 를 作 成 하 고
이 에 登 記 簿 와 相 違 없 을 을 認 證 함

西 紀 壹 九 六 年 月 日

서울 民 事 地 方 法 院

地 籍 課 長 官 官 印



官 印
官 印

152

152-45
157

167
195

土地建物登記簿本附屬(本籍)

이 謄本은 登記簿에 依하여 이 謄本을 作成하고
이에 登記簿와 相違없음을 認證함

西曆壹九六 年 月 日

民事地籍院



156

7-42 119

169

이 購本은 登記簿에 依하여 이 冊作威하고
이에 登記簿와 相違없음을 認證함

西紀壹九六 年 月 日

民事地方法院



160

193
171

161

이 冊 本 은 登 記 簿 에 依 하 여 이 를 作 成 하 고
이 에 登 記 簿 와 相 違 없 음 을 認 證 함

西 紀 壹 九 六 年 月 日

利 士 民 事 地 方 法 院



7-4 163

土地、建物登記簿本用紙 (甲)

表 題 部 (不 動 產 表)

表示 番號	表示 番號	表示 番號	表示 番號	表示 番號
示	示	示	示	示
欄	欄	欄	欄	欄
表	表	表	表	表
示	示	示	示	示
欄	欄	欄	欄	欄
表	表	表	表	表
示	示	示	示	示
欄	欄	欄	欄	欄

本登記簿是於本年十月九日
 青島市城區中區東鎮之新
 才閣本之地產是以
 發五百四號

2/2

甲

表示 番號	表示 番號	表示 番號	表示 番號	表示 番號
示	示	示	示	示
欄	欄	欄	欄	欄
表	表	表	表	表
示	示	示	示	示
欄	欄	欄	欄	欄
表	表	表	表	表
示	示	示	示	示
欄	欄	欄	欄	欄

四
 有產物登記簿本用紙
 本年八月二十四日
 青島市城區中區東鎮之
 才閣本之地產是以
 發五百四號

青島市城區中區東鎮
 才閣本之地產是以
 發五百四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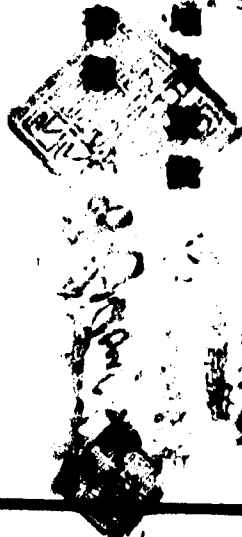
2/2

合校

이 謄本은 登記簿에 依하여 이 冊 作成하고
이에 登記簿와 相違없음을 認證함

西紀壹九六 年 月 日

서울 民事 總局 官廳



土地、建物登記簿基本冊 (甲)

甲		部 施 表	
事項	類別	(不 表 示)	
會社 不表示 買 事務所 事務所 事務所 事務所	事務所 事務所 事務所 事務所 事務所 事務所 事務所	事務所 事務所 事務所 事務所 事務所 事務所 事務所	事務所 事務所 事務所 事務所 事務所 事務所 事務所

台校

이 贖本은 登記簿에 依하여 이를 作成하고
이에 登記簿와 相違없음을 認證함

西紀壹九六 年 〇 月 〇 日

서울 民事 地方 法院



土地、建物登記簿原本簿籍 (甲)

甲		部 題 表	
番 號	事 項	番 號	事 項
<p>四 被 取</p> <p>香林寺舊址在永春縣永春鎮永春街 永春鎮〇八四號 香林寺舊址在永春縣永春鎮永春街 永春鎮〇八四號 四月 取信者前辦三南中 花里三里云云式香起 辛 松 洗</p>	<p>被 取</p>	<p>表示 表 示 欄</p> <p>永春縣永春鎮永春街永春鎮〇八四號 香林寺舊址在永春縣永春鎮永春街 永春鎮〇八四號 六月間至七月間香起 被 取 辛 松 洗</p>	<p>表示 表 示 欄</p>

高 檢
合 校

土地、建物登記簿原本紙(背面)

이 謄本은 登記簿에 依하여 이 謄本을 作成하고
이에 登記簿와 相違없음을 認證함

西紀壹九六 年 月 日

서울 民事 地方 法院

登記 簿 原本 紙
土地 建物 登記 簿 原本 紙
背面

(不効成示)

表題部

土地、建物登記簿本用紙 (甲)

甲	表示
<p>番號位 事 項 欄</p> <p>四 棟 取</p> <p>香取郡香取町大字香取一丁目 番地〇八四号 香取町大字香取一丁目九 番地 香取町大字香取三丁目 番地五八六番地 香取町大字香取一丁目 番地五七七番地</p> <p>2017年11月</p>	<p>表示 表 示 欄</p> <p>香取町大字香取一丁目五 番地五七七番地 香取町大字香取一丁目 番地五七七番地 香取町大字香取一丁目 番地五七七番地 香取町大字香取一丁目 番地五七七番地</p> <p>2017年11月</p>
<p>番號位 事 項 欄</p>	<p>表示 表 示 欄</p>
<p>番號位 事 項 欄</p>	<p>表示 表 示 欄</p>

寫
合校

이 屬本은 登記簿에 依하여 이 冊 作成하고
 이에 登記簿와 相違없음을 認證함

西紀壹九六 年 月 日

總務所長 官 印
 官 廳 用 印

韓 國 民 事 法 院

六六三 登記所

官 廳 用 印
 官 廳 用 印

土地、建物登記簿原本用紙（甲）

表 示 欄 (不 表 示 的 部 分)

表示
番號
表
示
欄
表示
番號
表
示
欄
表示
番號
表
示
欄

表
示
欄
表示
番號
表
示
欄
表示
番號
表
示
欄

表
示
欄

甲

表示
番號
表
示
欄
表示
番號
表
示
欄
表示
番號
表
示
欄

九
表
示
欄
表示
番號
表
示
欄
表示
番號
表
示
欄

表
示
欄



高
校
合
校

이 原本은 登記簿에 依하여 이 冊 作成하고
이에 登記簿와 相違 없음을 認 證 함

西 曆 一 九 二 六 年 五 月 日

서울 民事 總 務 法 院

이 冊 原本은 登記簿에 依하여 이 冊 作成하고
이에 登記簿와 相違 없음을 認 證 함

土地、建物登記簿原本用紙 (甲)

表示
表
示
欄
表示
表
示
欄
表示
表
示
欄

高層
台校

部 題 表

(不 表 示 的 不)

大 樓 建 築 各 戶 於 元 月 四 日
香 港 中 央 市 永 泰 街 運 送 新
大 才 村 永 泰 街 運 送
貨 物 千 木 箱 五 拜

※ 永 泰 街

甲

單位
事
項
欄
單位
事
項
欄
單位
事
項
欄

九 樓 平
香 港 中 央 市 永 泰 街 運 送 新
大 才 村 永 泰 街 運 送
貨 物 千 木 箱 五 拜

永 泰 街 〇 八 四 號
香 港 中 央 市 永 泰 街 運 送 新
大 才 村 永 泰 街 運 送
貨 物 千 木 箱 五 拜

※ 永 泰 街

土地、建物登記簿原本用紙 (本用紙)

이 屬本은 登記簿에 依하여 이 冊 作成하고
이에 登記簿와 相違 없음을 認證함

西紀壹九六 年 五月 日

서울 民事 法院



이 冊에 依하여 小冊 作成하고
본 冊에 相違 없음을 認證함
水 印 不 可 不 所

185

22-61 126

188

土地、建物登記簿簿本用紙(甲)

(示或或示不)

部 題 表

表示 表 示 關 表示 表 示 關

大 樓 建 築 各 年 抽 稅 月 四 月
香 什 街 內 創 甲 水 塔 抽 稅 新
大 才 祠 本 七 抽 稅 是
登 則 曾 九 抽 稅 彈 ↓

以 下 各 戶

標位 標位 標位 標位 標位 標位 標位 標位

甲

有 慶 堂 房 產 抽 稅 年 抽 稅 月 四 月
年 抽 稅 月 四 月
年 抽 稅 月 四 月

年 抽 稅 月 四 月
年 抽 稅 月 四 月
年 抽 稅 月 四 月
年 抽 稅 月 四 月
年 抽 稅 月 四 月
年 抽 稅 月 四 月
年 抽 稅 月 四 月
年 抽 稅 月 四 月

以 下 各 戶



高 檢 合 校

土地、建物登記簿原本附錄(水基)

이 屬本은 登記簿에 依하여 이를 作成하고
이에 登記簿와 相違없음을 認證함

西紀壹九六 年 5월 日

서울 民事 法院



187

7x-63

177

192

土地、建物登記簿本用紙 (甲)

高麗
台校

(不 動 產 表 示)

部 廳 表

表示
番號
表
示
欄
表示
番號
表
示
欄

以 爲 遺 棄 者 其 遺 棄 人 申 請
看 守 時 申 請 申 報 遺 棄 者
六 寸 附 表 亦 應 申 報
登 記 官 檢 查 申 報 後

平 安 山

甲

表示
番號
表
示
欄
表示
番號
表
示
欄

有 遺 棄 者 其 遺 棄 人 申 請
看 守 時 申 請 申 報 遺 棄 者
六 寸 附 表 亦 應 申 報
登 記 官 檢 查 申 報 後
平 安 山

土地、建物登記簿本付録(本誌)

이 謄本은 登記簿에 依하여 이 冊 作成하고
이에 登記簿와 相違 없음을 認證함

西紀壹九六 年 月 日

서울 民事 地方法院

登記
安 汝 禧 禧

94-65

179

이 謄本은 登記簿에 依하여 이 冊 作成하고
이에 登記簿와 相違없음을 認證함

西紀壹九六 年 月 日

서울 市 民 事 地 方 法 院

水 子 洞 法 官 官 署

大正 十 年 八 月 十 日
法 官 官 署 長 官 官 署 長 官 官 署 長 官



土地建物登記簿簿本用紙 (甲)

番 地 号

表 題 部 (不表是動不)

表 示 示 示 示 示 示 示 示 示 示

大才洞未亮書地
空四百拾九坪
以十坪

甲

九
香
界
平
治

(所有 地租 外別)

表 示 示 示 示

이 謄本은 登記簿에 依하여 이 謄本을 作成하고
이에 登記簿와 相違없음을 認證함

西紀壹九六 年 月 日

서울 民事 地方法院



Handwritten signature in vertical Korean script.



上海... 地圖...

香 記 示 示 示 示 示 示 示 示

表 類 部 (示末在動不)

香 記 示 示 示 示 示 示 示 示
香 記 示 示 示 示 示 示 示 示
香 記 示 示 示 示 示 示 示 示
香 記 示 示 示 示 示 示 示 示
香 記 示 示 示 示 示 示 示 示
香 記 示 示 示 示 示 示 示 示
香 記 示 示 示 示 示 示 示 示
香 記 示 示 示 示 示 示 示 示
香 記 示 示 示 示 示 示 示 示
香 記 示 示 示 示 示 示 示 示

香 記 示 示 示 示 示 示 示 示

甲

香 記 示 示 示 示 示 示 示 示
香 記 示 示 示 示 示 示 示 示
香 記 示 示 示 示 示 示 示 示
香 記 示 示 示 示 示 示 示 示
香 記 示 示 示 示 示 示 示 示
香 記 示 示 示 示 示 示 示 示
香 記 示 示 示 示 示 示 示 示
香 記 示 示 示 示 示 示 示 示
香 記 示 示 示 示 示 示 示 示
香 記 示 示 示 示 示 示 示 示

(標利外標明)

香 記 示 示 示 示

이 謄本은 登記簿에 依하여 이 謄 作成하고
이에 登記簿와 相違 없음을 認 證 함

西 曆 壹 九 六 〇 年 月 日

서울 民 事 地 方 法 院

장근호
장근호
장근호
장근호
장근호

書 印

